

강원특별자치도

부서경고·시정

제 목 공사 하자보수 점검 업무 소홀

기 관 명 ○○소방서

관 계 부 서 ○○○○○○

관 련 자

내 용

1. 업무 개요

○○소방서(○○○○○○)에서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남은 00건의 시설 공사에 대한 공사 하자보수·점검 및 하자보수보증금 관리 등 공사 하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.

2.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르면,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고,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그리고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70조에 따르면,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고, 하자 검사나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

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또한 「같은 법 시행규칙」 제69조에 따르면,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¹⁾를 갖추어두고 공사명, 계약금액, 계약상대자, 준공연월일,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,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록·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그리고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따르면,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종검사를 해야 하고,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 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또한 계약상대자는 정기검사와 최종검사에 참관하여야 하고,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,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고,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최종검사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따라서 ○○소방서(○○○○○○)에서는 자체 발주한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하자보수관리부를 작성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계약상대자 참관 하에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점검을 실시하고 하자기간 만료 14일 전에는 최종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어야 했다.

1) 하자보수관리부 : 공사명, 계약금액, 계약상대자, 준공일,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,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록한 장부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

가. 공사 하자관리 점검 업무 소홀

○○소방서(○○○○○○)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00건의 시설 공사에 대하여 0000년 ☆☆☆ ☆☆ ☆☆ 공사 등 00건은 연 2회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, ♡♡♡♡♡ ♡♡공사 등 0건은 정기하자검사를 일부 실시하였고, ☼☼ ☼☼☼☼ 공사 등 00건은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, 계약상대자를 검사에 참관하도록 하지 않는 등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.

나. 공사 하자보수관리부 유지관리 소홀

○○소방서(○○○○○○)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0000년 ☆☆☆ ☆☆ ☆☆ 공사 등 00건의 대상에 대하여 하자보수 관리 및 점검을 하면서 공사명, 계약금액, 계약상대자, 준공연월일,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,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록·유지하는 하자보수관리부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남은 공사 총 00건 중 00건에 대해서만 하자보수관리부를 한글 파일로 작성하였고 나머지 00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관리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4. 관련자 의견 및 판단: 의견 없음

5.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

소방◆ ◆◆◆은 0000. 0. 0.부터 0000. 0. 0.까지, 소방● ●●●은 0000. 0. 0.부터 0000. 0. 0.까지, 소방△ △△△는 0000. 0. 0.부터 현재까지 ○○○○○○으로,

소방◇ ◇◆◆는 0000. 0. 00.부터 0000. 0. 0.까지, 소방Ⓜ ⓂⓂⓂ은 0000. 0. 0.

부터 0000. 0. 0.까지, 소방● ●●●은 0000. 0. 0.부터 현재까지 ○○○○○○으로,

소방◎ ◎◎◎은 0000. 0. 00.부터 0000. 0. 0.까지, 소방☆ ☆☆☆은 0000. 0. 0.부터 현재까지 ○○ 및 ○○ ○○○로 업무를 담당하였다.

위 행위자들은 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공사 총 00건에 대하여 연 2회 정기하자검사 및 최종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나, ♥♥♥ ♥♥ ♥♥ 공사 등 00건은 연 2회 정기하자검사를 성실히 실시하지 않았으며, ♣♣ ♣♣♣ ♣♣ 공사 등 00건은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시설물 하자관리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 또한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관리부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00건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남은 공사 중 00건에 대하여 작성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공사에 대한 업무 처리에 소홀히 하였다. 이는 준공 후 하자처리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, 그로 인해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.

위와 같은 각 행위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을 위반한 것으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56조(성실 의무)²⁾를 위반하였지만 개인의 문책보다는 부서 전체의 문제라고 판단하여 「(소방)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」 제3조에 따라 “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,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”가 있는 「부서경고」 처분사유에 해당한다.

6. 조치할 사항 ○○○○○○은

- ① [부서경고]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담보책임 존속기간이

2)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남아 있는 공사에 대해 부적정하게 업무 처리한 ○○○○○에 「부서경고」 처분하니, 정기하자검사 및 최종검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기 바라며, 기관·부서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·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·부서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② [시정] ○○○○○는 미작성된 00건의 하자보수관리부를 현행화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면밀하게 작성하여 주시고, 특히 정기 하자 검사 및 최종 검사 이력을 재확인하여 누락된 내역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울러 공사 하자 보수 업무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조치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